

합천창녕보 및 창녕함안보 개방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계획 공고

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개방·모니터링 사업으로 시행된 합천창녕보 및 창녕함안보 개방에 따른 낙동강 내수면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 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어업권자께서는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, 열람기간 종료 후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대상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 :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개방·모니터링 사업
- 나. 사업시행자 :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장(보상대행: 한국수자원공사)
- 다. 사업시행지 : 합천창녕보 및 창녕함안보
- 라. 사업기간 : 2017. 6월 ~ 2020. 12월

2. 보상기준일 : 2017. 6. 1

3. 보상대상

- 가. 합천창녕보 및 창녕함안보 개방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결과 영향범위(경상남도 합천군, 의령군, 창녕군, 창원시, 밀양시 낙동강 일원)에 포함된 어업권으로 보상기준일부터 실제 조업하여 온 면허, 허가 및 신고어업
 - ※ 보상기준일 이후 신규 어업권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나. 보상대상 어업권 조서 : 게재 생략(개별통지 및 열람장소 비치)

4. 열람 및 이의신청

- 가.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: 2021년 3월 23일 ~ 4월 6일 (14일간)
- 나.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
 -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보관리단 합천창녕보사업소(창녕군 이방면 죽전등림길 154)
 -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보관리단 창녕함안보사업소(함안군 칠북면 봉촌2길 427)
 - 합천군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(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1길 22)
 - 의령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(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9동길 30)

-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(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1085)
- 창원시 의창구청 산림농정과(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123)
-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(경남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1008-19)

다. 열람내용 : 어업권 조서 내역

라. 이의신청 방법 : 열람결과, 어업권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열람 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유의사항 : 이의신청은 손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

5. 보상시기 : 2021년 4월 이후(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개별통보)

6. 보상방법 및 절차

가. 어업손실 보상액은 관계법령에 따라 전문용역기관의 손실액 용역조사 후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출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결과입니다.

나. 어업손실 보상금은 계약체결 후 신청자 본인의 예금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합니다.

다.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개인별 보상내용, 보상금액,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개개인별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.

7. 기타사항

가. 어업보상 대상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(044-201-7549/7566/7569)으로 연락바랍니다.

나. 보상계획 안내문은 어업 보상 대상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분께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(044-201-7549/7566/7569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열람기간 내 공휴일(토요일·일요일·법정 공휴일 포함)에는 열람하지 않습니다.

2021. 3. 23.

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·평가단
[보상대행 : 한국수자원공사]